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24. 3. 26. 부터 2024. 5. 7. 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 3. 13.에 관계부처 및 기관이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온라인 구매 플랫폼과 결제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구하는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 비롯된 분쟁사례도 크게 늘고 있으며,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관계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때문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소송 등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투입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훨씬 큰 관계로 소비자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분쟁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소송 없이도 신속한 구제 절차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안 제20조의4 신설)

개정안 제20조의4로 신설된 조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의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자료 등 제출의무와 문서송달을 대리합니다(제1항 각호).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제2항),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등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제3항). 국내대리인이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위반효과가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제32조) 및 과태료(제45조)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동의를결제도 도입(안 제32조의2 및 안 제32조의3 신설)

동의를결제도는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피해배상 등의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방문판매법 등 총 7개법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개정안 제32조의2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구제절차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 대신 동의를결을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한편 동의를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3 제1항), 심의절차를 중단할 목적으로 동의를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소되는 효과는 물론, 개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4. 5. 7. 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구매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가 지난 2월 역대 최대를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상위 순위 내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1년새 급증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해결할 전면적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구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벌과 간접적 강제수단까지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본 개정안에 맞추어 사업 방향을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우의 전자상거래팀은 AI·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방통위·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s

전상오

T. (+82) 2 6003 7087

파트너변호사

E. sojeon@yoonyang.com

이희재

T. (+82) 2 6182 8570

파트너변호사

E. heejil@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정호선

T. (+82) 2 6182 8548

변호사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